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09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30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3일, 윤영희 의원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- 상정일자 :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
(2024년 4월 30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윤영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,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하면서 학생, 교직원,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이에 한의사,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을 활용하여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

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학생 건강증진 사업’에 ‘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 사업’을 신설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운영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709호로 발의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,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로 학생·교직원·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이 체계적·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함에 따라 전문 의료인(의사, 한의사)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교육·상담·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사업을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행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1)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「의

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학교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

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의료인을 학교 의사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직무범위를 학교보건 계획에 대한 자문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·진단 및 평가, 보건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²⁾.

-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「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('24~'28)」을 살펴보면,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증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 건강정책 관련 담당 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발표하였으며,

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상위법 및 정부부처의 권고사항, 교육감의 공약사항³⁾을 반영하여 현재 ‘학교주치의(교의)지원 사업’을 통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·협력하여 학교 주치의(치과의사·한의사)가 학생·교직원·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1) 「학교보건법」

제15조(학교에 두는 의료인·약사 및 보건교사)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.

2)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

제23조(학교에 두는 의료인·약사 및 보건교사)

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·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.

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(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, 이하 “학교의사”라 한다) 및 학교에 두는 약사(이하 “학교약사”라 한다)와 같은 조 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의사의 직무

- 가.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
- 나.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·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
- 다.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
- 라.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
- 마.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
- 바.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

3)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약(5-2-1.학생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제도 정비)

- 필요성: 지역 의료단체와의 협력체계 재정비 및 교의 제도 활성화를 통한 학생 건강관리 지원 강화
- 대상: 서울 관내 모든 학교 및 지역 의료단체(의사회, 한의사회, 치과의사 등)

[표-1] 2024년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치의(교의) 지원 사업 내용

- 사업명: 2024년도 주치의(교의) 지원 사업
- 사업기간: 2024.3.~12.
- 참여기관: 서울특별시한의사회,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
- 지원대상: 초·중·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126교 내외
- 강연 및 상담 프로그램 주제(예시) ※ 예시 이외에도 기타 학교 희망 프로그램 등 가능

강의주제	비고
성교육(초등/중·고등)	한 의사
성장 및 비만관리	한 의사
금연·금주 등 약물오남용	한 의사
건강증진, 각종 생활습관질환 관련	한 의사
감염병 및 질병 예방	한 의사
구강위생,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	치과 의사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전문의료인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할 수 있는바, 이를 규정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4088, 2024. 4. 15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)</p> <p>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5조(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 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